

#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18년 3월 2일

키움투자자산운용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확인 · 서명 확인서

본인은 대표이사로서 '연차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확인 · 검토한 결과,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훈 (서명)



## 목 차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2
1) 조직도	2
2) 지배구조의 특징	2
3) 지배구조 현황(요약)	3
다. 관련 규정	3
2. 이사회	4
가. 역할(권한과 책임)	4
1) 총괄	4
2) 구체적 역할	4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4
나) 정관 변경	5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7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7
마)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8
바)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9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9
나. 구성(이사)	11
1) 총괄	11
2) 구성원	15
3) 요약	18
다. 활동내역	19
1) 활동내역 개요	19
2) 회의 개최내역	19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22
1) 이사회 평가	22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22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23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4
가. 역할(권한과 책임) .....	24
나. 구성 .....	24
다. 선임기준 .....	25
1) 후보 자격요건 .....	25
2) 후보 추천 절차 .....	27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28
1) 활동내역 개요 .....	28
2) 회의 개최내역 .....	28
3) 평가 .....	28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	29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	29
나) 후보 제안자 .....	29
다) 후보자 추천 이유 .....	30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	30
마) 자격충족 여부 .....	30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	30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31
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내용 .....	31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32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32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	32
가) 이사회 .....	32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35
다) 감사위원회(보수위원회 겸임) .....	36
라) 위험관리위원회 .....	37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	39
가) 사외이사 김종욱 .....	39
나) 사외이사 안미현 .....	39
다) 사외이사 채준 .....	39

라) 사외이사 문동성 .....	39
마) 사외이사 정충용 .....	39
바) 요약 .....	40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40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	40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40
1) 사외이사 안미현 .....	40
2) 사외이사 채준 .....	41
3) 사외이사 문동성 .....	41
4) 사외이사 정충용 .....	41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	42
바. 사외이사 평가 .....	42
1) 평가 개요 .....	42
2) 내부평가 .....	42
가) 내부평가 개요 .....	42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42
(1) 총론 .....	42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	43
3) 외부평가 .....	44
가) 외부평가 개요 .....	44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44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	44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	44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44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	45
1) 사외이사 김종욱 .....	45
가) 재직기간 .....	45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45
2) 사외이사 안미현 .....	45
가) 재직기간 .....	45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45

3) 사외이사 채준 .....	46
가) 재직기간 .....	46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46
4) 사외이사 문동성 .....	46
가) 재직기간 .....	46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46
5) 사외이사 정충용 .....	46
가) 재직기간 .....	46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47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47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47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49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49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49
1) 일반 .....	49
2) 비상계획 .....	49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	49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50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	50
바. 이사회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50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	50
6. 감사위원회 .....	51
가. 역할(권한과 책무) .....	51
1) 총괄 .....	51
2) 구체적 역할 .....	51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	51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	52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	52

라) 재무제표 검토 등 .....	52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	53
1) 총괄 .....	53
2) 구성원 .....	53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53
1) 활동내역 개요 .....	53
2) 회의 개최내역 .....	54
라. 감사보조조직 등 .....	55
7. 위험관리위원회 .....	56
가. 역할(권한과 책무) .....	56
1) 총괄 .....	56
2) 구체적 역할 .....	56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56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	56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57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	57
마) 기타 .....	57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	57
1) 총괄 .....	57
2) 구성원 .....	5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58
1) 활동내역 개요 .....	58
2) 회의 개최내역 .....	58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60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60
<b>제 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b>	
1. 보수위원회 .....	61
가. 총괄 .....	61

나. 구성(보수위원회위원) .....	61
1) 총괄 .....	61
2) 구성원 .....	61
다. 권한과 책임 .....	61
1) 총괄 .....	61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62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62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62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	62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	62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	63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63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	63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64
1) 의사결정 절차 .....	64
2) 활동내역 개요 .....	64
3) 회의 개최내역 .....	64
2. 보수체계 .....	65
가. 주요사항 .....	65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	65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	66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67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	67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	67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	68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	68
나. 보수 세부사항 .....	68
1) 임직원 총보수 .....	68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	68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	69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	69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	69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	70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	70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	71
6) 이연보수의 조정 .....	71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	72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1. 지배구조 일반

###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는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17년말 현재는 이사회는 80%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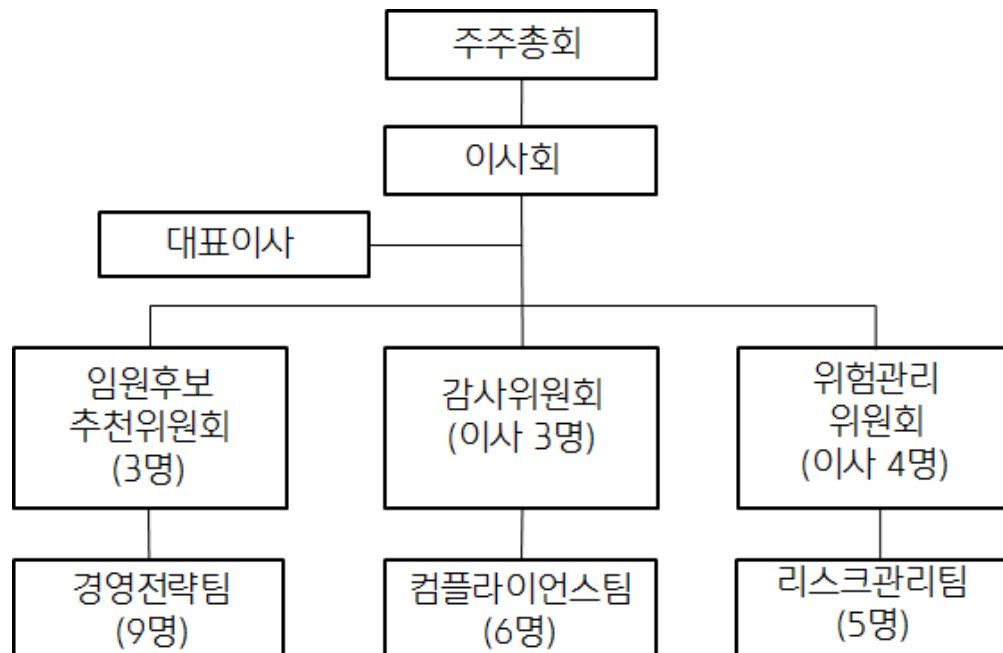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이사회규정 등 주요 내규 및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의 활동내역, 사외이사 등의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www.kiwoomam.com](http://www.kiwoomam.com))

당사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적정성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하겠습니다.

## 나. 지배구조 현황

### 1) 조직도 (2017.12월말 기준)



### 2) 지배구조의 특징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이 4명, 80%로 타 금융회사에 비해 높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내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보수위원회 역할 겸임), 위험관리위원회로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가 보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경영진업무의 검사업무가 보상에 대한 심의의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감사위원회에 금융전문가 또는 회계전문가인 2명의 사외이사가 참

여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1명이 위험관리위원회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감사위원회가 보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와 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주요 의사 결정 기구	4/5	의장 (이 현/상임)	정관, 이사회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임원 후보 추천(사외 이사, 대표이사, 감사 위원)	2/3	의장 (문동성/사외)	임원후보추천위 원회규정
감사위원회	감사 역할	3/3	의장 (문동성/사외)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위험관리 위원회	리스크 통제 관리	2/3	의장 (채 준/사외)	위험관리위원회 운영기준

####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이사회 규정
- 첨부3.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4. 윤리강령

## 2. 이사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1) 총괄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이사회규정 제 13조 1항 2호가)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년 경영목표·전략은 '17.10월에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17.12월 내부 확정을 하고 '17.12월 개최된 제7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17년 경영목표·전략을 승인하였습니다.

#### ■ '18년 경영목표·전략의 주요내용 ■

[경영방침]



[재무목표]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전년대비 증가율
1. 영업수익	489.2억원	516.9억원	5.7%
- 운용보수	454.8억원	486.5억원	7.0%
- 고유자산손익	34.4억원	30.4억원	-11.6%
2. 영업비용	281.2억원	286.1억원	1.7%
- 수수료비용	31.5억원	34.5억원	9.5%
- 판매관리비	249.7억원	251.6억원	0.8%
3. 대손비용	-0.5억원	0.8억원	-
4. 영업이익(대손비용반영)	208.5억원	230.0억원	10.3%
5. 수탁고	35.6조원	43.1조원	21.1%

나) 정관 변경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정관변경 안을 심의 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 제 13조 1항 1호 다).

이에 따라 '17년 2월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정관 변경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p>제 27 조(이사의 선임)</p> <p>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b>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④ 사외이사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b>금융회사지배구조내부규범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정</b>에 따른다.</p>	<p>제 27 조(이사의 선임)</p> <p>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b>임원후보추천위원회</b>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④ 사외이사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b>금융회사 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b>에 따른다.</p>
(신 설)	제33조의 1(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 해산 ·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내부통제기준 ·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li> <li>-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대주주 · 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li> </ul>
<p>제35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b>1.감사위원회</b></p> <p><b>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p> <p>3.기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사회가 정한 위원회</p> <p>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p>	<p>제35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b>1.감사위원회(보수위원회 겸임)</b></p> <p><b>2.임원후보추천위원회</b></p> <p>3.기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사회가 정한 위원회</p> <p>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p>
<p>제39조(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p> <p>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상 정해진 요건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p> <p><b>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b></p>	<p>제39조(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p> <p>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상 정해진 요건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p> <p><b>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b></p>
<p>제40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⑤ 생략</p> <p><b>⑥ 감사위원회는 보상위원회의 업무도 수행하며 이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한다.</b></p> <p>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p>제40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⑤ 생략</p> <p><b>⑥ 감사위원회는 보수위원회의 업무도 수행하며 이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한다.</b></p> <p>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주주총회에서 위 정관변경 안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이사회규정 등 내규에 반영하였습니다.

‘17년 12월 개최된 제7차 이사회에서는 이사의 임기변경을 아래와 같은 정관 변경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개 정 전	개 정 후
제 28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8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b>3년 이내</b> ,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주주총회에서 위 정관변경 안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이사회규정 등 내규에 반영하였습니다.

####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여할 결산 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경우 예산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심의의결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무 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년 예산은 '18년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17.12월 개최된 제7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 ['18년 예산의 주요내용]

항 목	2017년 실적	2018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주요내용
인건비성 경비	168.5억	151.0억	-17.5억	총 150명 예상
마케팅성 경비	11.6억	19.0억	7.4억	
물건비성 경비	60.3억	71.5억	11.2억	
제세공과 및 제상각	9.3억	10.1억	0.8억	
판매비와 관리비	249.7억	251.6억	1.9억	전년대비 0.8%증가

####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 등 조직의 중대변경에 대해서는 이사회



에 심의 · 의결 합니다.

## 마)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법령준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수립 및 평가합니다.

이에 2017년 2월 제2차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내부통제 점검 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 1. 평가목적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현황 파악 및 내부통제시스템 절차준수사항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예방 및 관리

### 2. 평가근거

“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2항 및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 직무규정” 제16조 「감사위원회는 적어도 연 1회 이상 회사 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책을 제시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 3. 주요 평가항목

#### - 위험인식 및 통제

자산운용 및 업무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고, 필요한 위험통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 - 영업계획 및 전략수립 프로세스

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기 위한 계획수립 여부와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평가

#### - 정보관리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생산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정보의 적시성, 정확성, 접근성, 신속성 등)

#### - 조직구조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각종 위험을 고려하여, 현재 조직구조상 내부건제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 4. 평가결과

- 2016년도 점검 결과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용 적정성 등은 확보 되었으나 회사의 비즈니스 규모 및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경우, 준법감시분야와 감사분야의 조직 분리 등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보완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5년도 하반기 당사 대체투자운용 및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반영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개선한 업무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점검하여, 관련 부문의 추가적인 운영 안정화를 기하고자 함

## 바)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이사회에서 경영목표·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기준을 수립·평가합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로 위험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고, 리스크관리규정을 통해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험관리실무위원회규정, 집합투자재산위험관리기준 등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운용에 필요한 규정 및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이사회는 대주주·임원과의 거래 등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는 활동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의 이익보호에 반하지 않도록 감소 시키는 활동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 거래 등을 제한하는 활동

이에 2017년 2월 제2차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와 계열회사간의 거래

구 분	내 용
거래의 종류 및 내용	- 계열회사등 <sup>[주1]</sup> 과키움투자자산운용(주)간의아래와같은방법으로거래하는행위일체 자본시장법 <sup>[주2]</sup> 에따른집합투자기구위탁운용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임계약 위탁운용

	<p>자본시장법에 따른 자문계약 서비스</p> <p>자본시장법에 따른 부수업무인 부동산투자자문, 특별자산투자 자문, 대리기관업무 등</p> <p>기타 계열회사와의 거래 일체</p>
거래 상대방	<p>-다우기술, 다우인큐브, 다우데이터, 키움증권, 다우와키움, 이머니, 사람인 HR, 키움인베스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미래테크놀로지, 한국정보인증, 키움에셋플래너, 키움저축은행, 에스지서비스(주), 사람인HS,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키움자산운용 인도네시아, 다우재팬, 다우과기개발유한공사, 다우홍콩유한회사, 나미빌딩주차장관리유한공사, 이매진스, 키다리아엔티, 키움에스저축은행, 다우베트남(유) 등 계열회사 전부</p> <p>-기타 상법 제398조 제1호 내지 5호에 따른 거래상대방</p>
거래 계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임계약, 자문계약, 부수업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등 거래 일체
거래 기간	-2017.4.1.부터 2018.3.31.까지
거래상대방별 거래 한도	-거래의 종류 및 내용별로 각각 20조원
거래근거/사유	<p>-거래근거: 상법 제398조 및 자본시장법</p> <p>-거래사유: 효율성 및 전문성 추구</p>
이해상충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해상충이 없는 거래
거래의 공정성	<p>-거래내용: 과거의 거래조건, 제3자와의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실질적 공정성(Substantive Fairness)을 갖춘 거래</p> <p>-거래절차: 거래의 시점 및 거래구조의 결정, 협상절차 등에 있어 실질적 공정성(Substantive Fairness)을 갖춘 거래</p>

[주1] 계열회사등: 상법 제398조 1호 내지 5호에 따른 거래상대방

[주2]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 이사회 승인 및 추인 대상 회사와 계열회사간의 업무위탁

구 분	내 용
거래의 종류 및 내용	- 계열회사등 <sup>[주1]</sup> 과 키움투자자산운용(주)간의 자본시장법 제42조 등에 따른 업무위탁
거래 상대방	-다우기술, 다우인큐브, 다우데이터, 키움증권, 다우와키움, 이머니, 사람인 HR, 키움인베스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미래테크놀로지, 한국정보인증, 키움에셋플래너, 키움저축은행, 에스지서비스(주), 사람인HS,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키움자산운용 인도네시아, 다우재팬, 다우과기개발유한공사

	<p>사, 다우홍콩유한회사, 나미빌딩주차장관리유한공사, 이매진스, 키다리아엔티, 키움에스저축은행, 다우베트남(유) 등 계열회사 전부</p> <p>-기타 상법 제398조 제1호 내지 5호에 따른 거래상대방 기타 상법 제398조 제1호 내지 5호에 따른 거래상대방</p>
거 래 계 정	<p>-자본시장법<sup>[주2]</sup>에따른집합투자기구판매위탁</p> <p>-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p> <p>-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위탁운용</p> <p>-자본시장법에 따른 일임계약에 따른 위탁운용</p> <p>-자본시장법에 따른 자문계약에 따른 투자자문 서비스</p> <p>-자본시장법에 따른 부수업무</p> <p>-정보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에 따른 정보처리 등 업무위탁</p> <p>-계열회사등과의 상기업무 외의 업무 위수탁 일체</p>
거 래 기 간	-2017.4.1.부터 2018.3.31.까지
거래상대방별 거 래 한 도	-거래계정별로 각각 40조원
거래근거/사유	<p>-거래근거: 상법 제398조 및 자본시장법</p> <p>-거래사유: 효율성 및 전문성 추구</p>
이해상충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해상충이 없는 거래
거래의 공정성	<p>-거래내용: 과거의 거래조건, 제3자와의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실질적 공정성(Substantive Fairness)을 갖춘 거래</p> <p>-거래절차: 거래의 시점 및 거래구조의 결정, 협상절차 등에 있어 실질적 공정성(Substantive Fairness)을 갖춘 거래</p>

[주1] 계열회사등: 상법 제398조 1호 내지 5호에 따른 거래상대방

[주2]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나. 구성(이사)

### 1) 총괄

이사회는 이사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합니다. 최소 인원수를 3명으로 규정한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업무를 감안할 때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 구성원수가 3명 미만인 경우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가 최소 2명이상 필요 합니다.

이사회는 모두 5명의 이사(대표이사 1명과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상임이사(대표이사)는 3년 이내, 사외이사의 경우 2년 이내입니다. 연임이 가능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 재임기간이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임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의 정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함이 없습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소극적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상임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2.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관련하여 법적,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써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적극적 자격요건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금융투자회사등은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17년 말 현재 이사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금융, 경제, 경영, 회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서는 현 대표이사가 맡고 있으며, 선임사외이사로는 금융 및 경영, 회계 분야 전문가이신 문동성 사외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되었습니다.

## 2) 구성원

### ① 이사회회장 이현 (대표이사, 상임)

#### [학력사항]

1970 광주 송일고 졸업  
1982 서강대학교 철학과  
1988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1996 국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경력사항]

1983.04 ~ 1987.04 조흥은행  
1987.05 ~ 1989.07 동원경제연구소  
1989.08 ~ 1999.07 동원증권  
2000.01 ~ 2002.03 키움닷컴증권(주) 이사  
2002.02 ~ 2006.12 키움닷컴증권(주) 상무  
2007.01 ~ 2009.03 키움증권(주) 전무  
2009.04 ~ 2012.12 키움증권(주) 부사장  
2013.01 ~ 2015.12 키움저축은행 대표이사

#### [임기]

2016.01 ~ 2017.12

#### [역할]

이사회회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② 사외이사 안미현

#### [학력사항]

1985.02 광주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03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2005.08 해외연수(미국 조지타운대)



[경력사항]

1991. 서울신문사 입사  
2010. 문화부장  
2012. 경제부장  
2013. 논설위원  
2014. 현) 부국장 겸 금융부장

[임기]

2017.03 ~ 2018.03

[역할]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③ 사외이사 채준

[학력사항]

1993.0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경제학 전공)  
1995.0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재무관리 전공)  
1997.06 Stanford University, Department of Statistics 석사 (통계학 전공)  
2003.06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Sloan School of Management 박사 (Finance 전공)

[주요경력사항]

1997 ~ 2003 미국,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Laboratory of Financial Engineering, 연구원  
2003 ~ 2006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School of Management, 교수 (재무관리)  
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재무관리), 2006-현재

[임기]

2017. 3 ~ 2018. 3

[역할]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 ④ 사외이사 문동성

[학력사항]

1969.02 경북고등학교

1973.02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

[주요경력사항]

1976.03 한국상업은행 입행

2002.04 종로기업영업본부 본부장

2003.12 국제업무지원단 단장

2004.04 ~ 2007.04 기업금융고객본부장(부행장)

2007.08 ~ 2008.06 (주)이스타 투자 자문 사장

2008.06 ~ 2010.12 경남 은행장

2011.04 ~ 2011.07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2012.08 ~ 2014.01 CXC그룹 대체투자본부 고문

2014.02 ~ 2015.04 한국종합캐피탈(주) 고문

[임기]

2016. 3 ~ 2018. 3

[역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 ⑤ 사외이사 정충용

[학력사항]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주요경력사항]

1979년                    기업은행 입행  
 1985년                    신한은행 입행  
 2004년 ~ 2006년        신한은행 콜센터 부장  
 2006년 ~ 2008년        신한은행 서청주지점장  
 2009년 ~ 2010년        신한은행 성포동지점장  
 2011년 ~ 2011년        신한은행 남산금융센터장  
 2012년 ~ 2013년        신한은행 스마트금융센터장  
 2014년 ~ 2016년        신한은행 본부장(미래채널본부/충북영업본부)  
 2016년 ~ 현재            경기고속도로 부사장 겸 CFO

[임기]

2017. 3 ~ 2019. 3

[역할]

감사위원회 위원

- 연도 중 퇴임 이사 : 김종욱 사외이사(2017.3.17. 사임)

3) 요약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이 현	상임	이사회회장	현)키움투자자산 운용 대표이사	'16.1.1	'17.12.31	24개월	위험관리 위원회, 임추위
문동성	사외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사외이사	경남은행장	'16.3.17	'18.3.17	22개월	감사위, 임추위
안미현	사외	사외이사	현)서울신문사 부국장	'14.5.2	'18.3.23	44개월	위험관리 위원회,
채준	사외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현) 서울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재무관리)	'14.5.2	'18.3.23	44개월	위험관리 위원회, 감사위, 임추위
정충용	사외	사외이사	경기고속도로 부사장 겸 CFO	'17.3.23	'19.3.23	9개월	감사위

## 다. 활동내역

### 1) 활동내역 개요

‘17년에는 총 8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100%입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1. 제1차 이사회 : 2017.01.23. 오전 11시 / 안건통지일 : 2017.1.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김종욱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김종욱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 고유재산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제2차 이사회 : 2017.02.09 오전 11시 / 안건통지일 : 2017.02.0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김종욱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김종욱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6년 4분기 재무실적 보고						이견없음
2. FY 2016 감사실시결과 보고						이견없음
3. FY 2016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이견없음
4. FY 2017 회사 고유재산 외부감사인 선임						이견없음
5. FY 201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이견없음
6. 주요소송 진행내역 보고						이견없음
4. 의결안건						
1.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제29기 영업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승인과 주주총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제29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승인과 주주총회 상정						
4. 이사 후보(안) 주주총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정충용 이사 후보(안) 주주총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 감사위원 후보(안) 주주총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 이사보수 및 상여금 지급한도(안) 주주총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8. 정관 개정의 건 주주총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9. 계열사 PE설립에 따른 출자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0.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제3차 이사회 : 2017.03.23 오전 11시15분 / 안건통지일 : 2017.03.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 보고						이견없음
4. 의결안건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제4차 이사회 : 2017.04.21. 오전 11시30분 / 안건통지일 : 2017.04.18.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7년 1분기 재무실적 보고						이견없음
2. 현대자산운용 인수검토 관련 보고						이견없음

5. 제5차 이사회 : 2017.07.20. 오전 11시 / 안건통지일 : 2017.07.1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7년 상반기 재무실적 보고						이견없음
2. 2017년 상반기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이견없음
3. 주요 소송 진행내역 보고						이견없음
4. 의결안건						
1. 재산상 이익 제공한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 제6차 이사회 : 2017.10.26 오전 11시30분 / 안건통지일 : 2017.10.2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7년 3분기 재무실적 보고						이견없음
2. 2017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회의록 요약 보고						이견없음

7. 제7차 이사회 : 2017.12.27. 오전11시 / 안건통지일 : 2017.12.2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금융감독원 검사(서면검사)결과 보고						이견없음
4. 의결안건						
1. 2017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주주총회에 상정할 이사 후보(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정관개정의 건 주주총회 상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	----

8. 제8차 이사회 : 2017.12.28. 오전11시 / 안건통지일 : 2017.12.2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 1) 이사회 평가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전년도 이사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이사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이사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의 실질성 등이 포함됩니다.

###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기준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공정성, 전문성, 참여도 등의 활동 평가와 기업과 주주 등을 위한 의사결정 노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이사회 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의장으로 경영 능력이 탁월한 이현 대표를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외이사가 아닌자가 이사회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당 금융회사는 '17년 3월 3차 이사회에서 문동성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재무금융분야의 탁월한 전문가 이면서 우리회사의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2016년 10월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9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운용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및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최고경영자 이외에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의 임원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여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대표이사를 포함한 1명을 사내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7%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현	상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16.1.1.	'17.12.31.

문동성	사외이사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16.3.17.	'18.3.17
채준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17.3.23.	'18.3.23

## 다. 선임기준

### 1) 후보 자격요건

#### - 소극적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상임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2.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관련하여 법적,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

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적극적 자격요건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금융투자회사등은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 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이사회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대상을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사회가 정한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원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17년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3개였으며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1.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7.02.09. 오전 10시45분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문동성	이현	채준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정충용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7.12.21. 오전 11시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문동성	이현	채준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3)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 사외이사 후보

###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 정충용 사외이사

#### [학력사항]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주요경력사항]

1979년                    기업은행 입행

1985년                    신한은행 입행

2004년 ~ 2006년        신한은행 콜센터 부장

2006년 ~ 2008년        신한은행 서청주지점장

2009년 ~ 2010년        신한은행 성포동지점장

2011년 ~ 2011년        신한은행 남산금융센터장

2012년 ~ 2013년        신한은행 스마트금융센터장

2014년 ~ 2016년        신한은행 본부장(미래채널본부/충북영업본부)

2016년 ~ 현재         경기고속도로 부사장 겸 CFO

2014.02 ~ 2015.04     한국종합캐피탈(주) 고문

### (나) 후보 제안자

-이현 대표이사(사내이사)

1983.04 ~ 1987.04     조흥은행

1987.05 ~ 1989.07 동원경제연구소  
 1989.08 ~ 1999.07 동원증권  
 2000.01 ~ 2002.03 키움닷컴증권(주) 이사  
 2002.02 ~ 2006.12 키움닷컴증권(주) 상무  
 2007.01 ~ 2009.03 키움증권(주) 전무  
 2009.04 ~ 2012.12 키움증권(주) 부사장  
 2013.01 ~ 2015.12 키움저축은행 대표이사  
 2016.01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다) 후보자 추천이유**

- 후보자 정충용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기업은행을 입학하여 신한은행까지 30년 이상 금융계 종사와 함께 현재는 경기고속도로 부사장겸 CFO를 겸직하고 계십니다. 금융경제분야의 폭넓은 시각 보유, 평판이 우수하였던 점과, 인품과 명성 등을 감안 시 독립성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자본시장법 제24조	○	해당사항 없음
나) 자본시장법 제25조 제5항	○	해당사항 없음
다) 비계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등	○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전문성	○	30년 이상 금융계 종사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문제 해당사항 없음
다) 윤리책임성	○	성실한 위원회 활동
라) 충실성	○	위원회 활동 등 성실히 수행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정충용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2017년 2월 9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2017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3명이며 이중 2명이 연임, 1명이 사임하였으며 내/외부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 모두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 보고일자: 2017년 2월 9일 제2회 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1	33.3%	
경제	1	33.3%	
회계	1	33.3%	
합계	3	100%	



##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 가) 이사회

1. 제1차 이사회 : 2017.01.23. 오전 11시 / 안건통지일 : 2017.1.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김종욱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김종욱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 고유재산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제2차 이사회 : 2017.02.09 오전 11시 / 안건통지일 : 2017.02.0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김종욱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김종욱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6년 4분기 재무실적 보고						이견없음
2. FY 2016 감사실시결과 보고						이견없음
3. FY 2016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이견없음
4. FY 2017 회사 고유재산 외부감사인 선임						이견없음
5. FY 201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이견없음
6. 주요소송 진행내역 보고						이견없음
4. 의결안건						
1.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제29기 영업보고서와 재무제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 승인과 주주총회 상정						
3. 제29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과 주주총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이사 후보(안) 주주총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정충용 이사 후보(안) 주주총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 감사위원 후보(안) 주주총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 이사보수 및 상여금 지급한도(안) 주주총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8. 정관 개정의 건 주주총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9. 계열사 PE설립에 따른 출자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0.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제3차 이사회 : 2017.03.23 오전 11시15분 / 안건통지일 : 2017.03.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 보고						이견없음
4. 의결안건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제4차 이사회 : 2017.04.21. 오전 11시30분 / 안건통지일 : 2017.04.18.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7년 1분기 재무실적 보고						이견없음
2. 현대자산운용 인수검토 관련						이견없음

보고						
----	--	--	--	--	--	--

5. 제5차 이사회 : 2017.07.20. 오전 11시 / 안건통지일 : 2017.07.1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7년 상반기 재무실적 보고						이견없음
2. 2017년 상반기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이견없음
3. 주요 소송 진행내역 보고						이견없음
4. 의결안건						
1. 재산상 이익 제공한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 제6차 이사회 : 2017.10.26 오전 11시30분 / 안건통지일 : 2017.10.2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7년 3분기 재무실적 보고						이견없음
2. 2017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회의록 요약 보고						이견없음

7. 제7차 이사회 : 2017.12.27. 오전11시 / 안건통지일 : 2017.12.2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1. 사외이사 성명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금융감독원 검사(서면검사)결과 보고						이견없음
4. 의결안건						
1. 2017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주주총회에 상정할 이사 후보(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정관개정의 건 주주총회 상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건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8. 제8차 이사회 : 2017.12.28. 오전11시 / 안건통지일 : 2017.12.2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 현	문동성	채준	안미현	정충용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7.2.9. 오전 10시45분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문동성	이현	채준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정충용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7.12.21. 오전 11시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문동성	이현	채준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다) 감사위원회(보수위원회 겸임)

1. 제2017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2017.02.09.(목) 오전10시 (안건 통지일: 2017.02.0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문동성	안미현	김종욱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FY2016 내부통제 업무실적 및 FY2017 업무계획보고				이견없음
4. 의결안건				
1.FY2016 재무제표등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FY2017 회사고유 재산 외부감사인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FY2017 외부감사인 세무조정업무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FY201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이사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FY2016 감사실시결과 보고 및 이사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FY2017 감사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FY2016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및 이사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8.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제2017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2017.03.23.(목) 오전11시 30분  
(안건 통지일: 2017.03.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문동성	채준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제2017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2017.07.20.(목) 오전10시 30분

(안건 통지일: 2017.07.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문동성	채준	정충용	
1. 위원 성명	문동성	채준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주요소송 진행내역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이견없음

4. 제2017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2017.10.26.(목) 오전 10시 30분

(안건 통지일: 2017.10.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문동성	채준	정충용	
1. 위원 성명	문동성	채준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 외부감사인의 집합투자기구 임차료 지급 능력 평가용역 제공 동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제2017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2017.12.27.(수) 오전10시 (안건 통지일: 2017.12.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문동성	채준	정충용	
1. 위원 성명	문동성	채준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금융감독원 검사(서면검사)결과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이견없음

## 라) 위험관리위원회

1. 제2017년도 제 1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7년 01월 23일 (오후2시)

(안건 통지일 : 2017년 01월 1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현	김종욱	안미현	채준	
1. 위원 성명	이현	김종욱	안미현	채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요약 보고의 건	-	-	-	-	이견없음
4. 의결안건					
1. 고유재산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고유재산 투자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고유재산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제2017년도 제 2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7년 02월 09일 (오전 10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7년 02월 06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현	김종욱	안미현	채 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고유재산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제2017년도 제 3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7년 03월 23일 (오전 11시 25분)  
 (안건 통지일 : 2017년 03월 20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현	안미현	채 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제2017년도 제 4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7년 07월 20일 (오전 10시 00분)  
 (안건 통지일 : 2017년 07월 1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현	채준	안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위험관리실무위원회 요약 보고의 건	-	-	-	이건 없음

5. 제2017년도 제 5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7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안건 통지일 : 2017년 12월 2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현	채준	안미현	
1. 위원 성명	이현	채준	안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 고유재산 투자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 가) 사외이사 김종욱

사외이사 김종욱은 '17년 3월에 사임하였으며, '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2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5회중 1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 중 2회 참석하였습니다.

### 나) 사외이사 안미현

사외이사 안미현은 '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5회중 1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 다) 사외이사 채준

사외이사 채준은 '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모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회 모두와 감사위원회 5회중 4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 라) 사외이사 문동성

사외이사 문동성은 '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모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회 모두와 감사위원회 5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 마) 사외이사 정충용

사외이사 정충용은 '17년 3월에 신규로 취임하였으며, '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6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5회 중 4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바) 요약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시간 실적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김종욱	8	2	2	-	-	-	5	1	1	5	2	2	15시간
안미현	8	8	8	-	-	-	5	1	1	5	5	5	42시간
채준	8	8	8	2	2	2	5	4	4	5	5	5	57시간
문동성	8	8	8	2	2	2	5	5	5	-	-	-	45시간
정충용	8	6	6	-	-	-	5	4	4	-	-	-	30시간

※ 2017.3.17. 정충용이사 선임 / 2017.3.17. 김종욱이사 사임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가 입 사 : 주간사(한화손해보험)
- 계약기간 : 2017년 5월 3일 ~ 2018년 5월 3일(1년)
- 부보금액 : 30억원
- 보 험 료 : 8,000,000원
- 면책조항 : 부당행위로 인하여 제기된 배상책임과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를 보상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 해당사항없음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안미현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자본시장법 제24조	○	해당사항 없음
나) 자본시장법 제25조 제5항	○	해당사항 없음
다) 비계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등	○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전문성	○	20년 이상 언론계 종사 (경제부 전문기자)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문제 해당사항 없음
다) 윤리책임성	○	성실한 위원회 활동
라) 충실성	○	위원회 활동 등 성실히 수행

## 2) 사외이사 채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자본시장법 제24조	○	해당사항 없음
나) 자본시장법 제25조 제5항	○	해당사항 없음
다) 비계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등	○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전문성	○	10년 이상 교수 재직 (재무관리)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문제 해당사항 없음
다) 윤리책임성	○	성실한 위원회 활동
라) 충실성	○	위원회 활동 등 성실히 수행

## 3) 사외이사 문동성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자본시장법 제24조	○	해당사항 없음
나) 자본시장법 제25조 제5항	○	해당사항 없음
다) 비계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등	○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전문성	○	30년 이상 금융계 종사 및 경남 은 행장 역임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문제 해당사항 없음
다) 윤리책임성	○	성실한 위원회 활동
라) 충실성	○	위원회 활동 등 성실히 수행

## 4) 사외이사 정충용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자본시장법 제24조	○	해당사항 없음
나) 자본시장법 제25조 제5항	○	해당사항 없음
다) 비계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등	○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전문성	○	30년 이상 금융계 종사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문제 해당사항 없음
다) 윤리책임성	○	성실한 위원회 활동
라) 충실성	○	위원회 활동 등 성실히 수행

##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바. 사외이사 평가

###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내부평가를 실시합니다. 단 외부평가는 필요 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 2) 내부평가

#### 가) 내부평가 개요

-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당사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② 평가 기준 : 평가기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전문성(선임시 고려된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충실성(사외이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할애 하고 있는지 여부 등), 기여도(이사회등의 심의의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기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중·하의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 ③ 평가 절차 :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로 이루어지며 정량평가는 참석 및 의결 참여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며 정성평가는 이사회이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시 이사회가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의 전반에 대해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① 총론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졌습니다. 평가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대부분의 사외이사가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외부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 1) 정량평가 : 참석 및 의결참여 건수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시간		평가
			임추위(전,사추위)		감사위원회		위험관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목표	실적	
김종욱	2	2	-	-	1	1	2	2	5	5	40
안미현	8	8	-	-	1	1	5	5	14	14	40
채준	8	8	2	2	4	4	5	5	19	19	40
문동성	8	8	2	2	5	5	-	-	15	15	40
정충용	6	6	-	-	4	4	-	-	10	10	40

※ 2017.3.17. 정충용이사 선임 / 2017.3.17. 김종욱이사 사임

### 2) 정성평가 : 참여, 제안, 업무 및 업황 진단으로 구분하여 평가 진행

사외이사	평가결과			평가
	전문성	총실성	기여도	
김종욱	상	상	상	60
안미현	상	상	상	60
채준	상	상	상	60
문동성	상	상	상	60
정충용	상	상	상	60

(상 : 20점, 중 15점, 하 10점을 부여함)

① 안미현 사외이사 : 20년 이상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문화부장, 경제부장, 논설위원, 경제부 전문기자 등을 역임. 이사회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② 채준 사외이사 : 경영, 통계, Finance 분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 그동안의 경험을 두루 활용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③ 문동성 사외이사 : 30년 이상 금융계 종사하면서 경남은행장을 역임. 금융경제분야의 폭넓은 전문성 보유.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④ 정충용 사외이사 : 30년 이상 금융계 종사하면서 기업은행을 거쳐 신한은행 본부장을

역임. 금융회사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나 규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 보유. 평판이 우수하며 이사회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 3) 결과

평가항목		김종욱	안미현	채준	문동성	정충용
정량평가	1. 참석	20	20	20	20	20
	2. 의결참여	20	20	20	20	20
정성평가	3. 전문성	20	20	20	20	20
	4. 충실성	20	20	20	20	20
	5. 기여도	20	20	20	20	20
합계		100	100	100	100	100
평가결과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 2017.3.17. 정충용이사 선임 / 2017.3.17. 김종욱이사 사임

### (3) 외부평가

#### (가) 외부평가 개요

- 외부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필요성이 없어 진행된 사안이 없습니다.

####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를 2017년 3월 23일 이사회에서 선임하였습니다.

####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인사담당팀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보조합니다.

인사담당팀은 본부장 1명(팀장 겸직) 및 팀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전략 팀 소속으로 기획, 재경, 총무 업무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팀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검증 실무 평가 실무 및 위원회 소집, 개최, 의안 작성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 1) 사외이사 김종욱

가) 재직기간 : 2016.03.17. ~ 2017.03.17. (최초선임일 2014.05.02.)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0.07억원	
	기본금	0.07억원	월 250만원 / '17년3월사임
	상여금	-	
	기타 수당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 2) 사외이사 안미현

가) 재직기간 : 2017.03.23. ~ 2018.03.23. (최초선임일 2014.05.02.)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0.3억원	
	기본금	0.3억원	월 250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 3) 사외이사 채준

가) 재직기간 : 2017.03.23. ~ 2018.03.23. (최초선임일 2014.05.02.)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0.3억원	
	기본급	0.3억원	월 250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 4) 사외이사 문동성

가) 재직기간 : 2016.03.17. ~ 2018.03.17. (최초선임일 2016.03.17.)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0.3억원	
	기본급	0.3억원	월 250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 5) 사외이사 정충용

가) 재직기간 : 2017.03.23. ~ 2019.03.23. (최초선임일 2017.03.23.)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0.23억원	
	기본급	0.23억원	월 250만원 / '17년3월선임
	상여금	-	
	기타 수당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김학균	'11.06.01	'13.06.27	24개월	감사위(11.6~13.6)		로펌 Patton Boggs LLP
이명환	'11.06.01	'13.06.27	24개월	감사위(11.6~13.6) 사추위(11.6~13.6)		한국은행
김성진	'12.05.31	'14.05.02	11개월	감사위(12.5~14.5) 사추위(12.5~14.5)		이촌법무법인대표변 호사
김경호	'13.06.27	'14.05.02	10개월	감사위(13.6~14.5)		날코코리아 부사장 도신산업 기획담당이사
박상호	'13.06.27	'14.05.02	10개월	감사위(13.6~14.5)		삼성생명 법인영업본부장, 부사장
박기환	'14.12.01	'16.11.30	24개월	감사위(15.1~16.11)		국민대학교 경영학교 교수(07~현재)
김종욱	'14.05.02	'17.03.16	34개월	임추위(전,사추위) (14.5~17.3) 리스크위(14.5~17.3) 감사위(14.5~17.3)		한국증권금융 본부장 퇴임
안미현	'14.05.02	'18.03.23	44개월	위험관리위		서울신문사 부국장



						(91~현재)
채준	'14.05.02	'18.03.23	44개월	위험관리위 위원장 임추위 감사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재무관리) (06~현재)
문동성	'16.03.17	'18.03.17	21개월	감사위 위원장 임추위 위원장	선임사외이 사(17.3~)	한국종합캐피탈(주) 고문
정충용	'17.3.23	'19.3.23	9개월	감사위		경기고속도로 부사장 겸 CFO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시행된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 계획 사항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2016년 10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경영승계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경영승계 절차 개시 등입니다.

###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1) 일반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명시한 최고경영자의 자격에 부합할 것을 최소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하여야 합니다.

####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금융감독기구로부터의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비상경영계획 승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이사회는 경영승계 사유, 개시 일자, 결정시기 등을 결정하고, 경영승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의 최고경영자 직무 대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평가 : 후보자 김성훈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후보자 김성훈은 1995년 동부증권 근무를 시작으로 23년간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당사 마케팅본부장으로서 회사의 비약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 도덕성,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후보로 판단하여 당사의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당사는 전 최고경영자인 이현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2017년 12월 21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 김성훈의 자격요건과 적정성 등을 심의한 후 주주총회에 해당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28일 개최된 제2017-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후보자 김성훈이 최고경영자로 선임되었습니다.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 인사담당팀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사담당팀은 본부장 1명(팀장 겸직) 및 팀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전략팀 소속으로 기획, 재정, 총무 업무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 6. 감사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독을 수행합니다.

더불어 경영진 등에 대한 보상을 심의·의결합니다(보수위원회의 역할을 겸임합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 검증된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심의·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 보상에 대한 심의·의결 시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재무제표 신뢰도 제고, 리스크 감독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금융기관 경영전문가가 포함된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40조에 의거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 업무, 준법, 경영, IT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의 수립,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고, 사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중 고유재산 시재감사,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감사 등 감사인 및 감사보조조직이 실시한 내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감사위원이 회사의 경영실태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 고유재산에 대한 외부감사인 및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7년 2월 회사 고유재산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을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검토단계부터 최종 선임단계까지 의사결정 과정을 감독 및 확인하였습니다.

회사 고유재산에 대한 한영회계법인은 2017년 회계연도의 연간재무제표, 분기재무제표, 반기재무제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검토하며, 감사보수는 52백만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을 승인하고,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활동을 수행합니다. 종합감사는 정기적인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며, 일상감사, 특별감사 등 감사활동의 결과 및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는 감사위원회에 보고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며,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2017년 2월에 소집된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담당부서장은 분기 시재감사 등 전년도 내부감사실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2016년 사업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승인하여 2017년 2월 2차 이사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17년도 2차 감사위원회(2017.2월)에서 2017년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및 내부통제 업무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 1) 총괄

감사위원회는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 2) 구성원

(2017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문동성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2016.3.17	2018.3.17
채준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7.3.23	2018.3.23
정충용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7.3.23	2019.3.23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17년에는 총 5회의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감사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100%입니다

2017년 2월에 소집된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전반의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결과 및 2017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3월에 소집된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문동성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17년 10월에 소집된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에 대한 임차료 지급 능력 평가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7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2017.02.09.(목) 오전10시  
 (안건 통지일: 2017.02.0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종욱	안미현	문동성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에 대한 의견				
1.FY2016 재무제표등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FY2017 회사고유 재산 외부감사인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FY2017 외부감사인 세무조정업무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FY201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이사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FY2016 감사실시결과 보고 및 이사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FY2017 감사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FY2016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및 이사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8.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17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2017.03.23.(목) 오전11시 30분  
 (안건 통지일: 2017.03.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문동성	채준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17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2017.07.20.(목) 오전10시30분  
 (안건 통지일: 2017.07.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문동성	채준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주요소송 진행내역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이견없음

(라) 제2017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2017.10.26.(목) 오전 10시 30분

(안건 통지일: 2017.10.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문동성	채준	정충용	
1. 위원 성명	문동성	채준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 외부감사인인 집합투자기구 임차료 지급 능력 평가용역 제공 동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17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2017.12.27.(수) 오전10시

(안건 통지일: 2017.12.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문동성	채준	정충용	
1. 위원 성명	문동성	채준	정충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금융감독원 검사(서면검사)결과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이견없음

## 라. 감사보조조직 등

- 회사의 감사인 및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감사업무를 수행함.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감사보조조직은 4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팀이며, 감사인은 컴플라이언스팀장임.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17.07.20	감사위원회 개최	주요소송 진행내역 보고
2017.12.27	감사위원회 개최	금융감독원 검사(서면검사)결과 보고
2017.05.15.~2017.05.19	시재감사(특별감사)	잔액증명서와 회계 명세서 검사 특이사항 없음
2017.08.07.~2017.08.11	시재감사(특별감사)	잔액증명서와 회계 명세서 검사 특이사항 없음
2017.11.13.~2017.11.17	시재감사(특별감사)	잔액증명서와 회계 명세서 검사 특이사항 없음



## 7. 위험관리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집합투자재산 및 회사 고유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3인의 이사(위원장 1명, 위원 2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로부터 위험관리 관련 권한을 위임 받아 위험관리 최고이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 21조(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네 가지 주요사항(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등)과 위험관리위원회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의 하부위원회로서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 또는 실무 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험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및 주요 사항 이외의 위험관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기준 등을 통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추구하여야 하는 최상위 가치규범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성과, 수익성, 성장성의 균형을 도모하여 주주가치 창출과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위험관리 철학'으로 정립하였습니다. 위험관리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수용 가능한 위험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의 위험관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역할 명시와 위험관리 조직 등의 업무분장, 위험의 인식·측정·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수립하였습니다.

#####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는 고유재산에 대한 위험허용수준을 회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의 200%에 미달하지 않도록 설정하였으며, 콜차입 등 단기차입의 원칙적 금지,

유동성위험측정은 유동화 가능 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전월말 회사 총자산의 10%이상이 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수준은 각 집합투자기구별 특성에 맞게 제시된 평가지표 및 집합투자규약을 기준으로 위험수준을 점검하고, 필요시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고유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매년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차 위험관리위원회(2017년 1월 23일)에서 고유재산 투자한도를 설정 하였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의 경우에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위험관리기준, 고유재산 위험관리기준, 집합투자재산 위험관리기준,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운영기준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관리기준을 제정·변경한 후에는 금융감독원 및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2017년 1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반영한 효율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유재산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 마) 기타

위험관리위원회는 2017년도 1차 및 2차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고유재산 투자와 관련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3인의 이사(위원장 1명, 위원 2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위험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 2) 구성원 (2017년말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채 준	사외	위원장	17.3.23	18.3.23
이 현	상임	위원	16.1.1	17.12.31
안미현	사외	위원	17.3.23	18.3.23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17년 총 5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위원장 및 위원들의 평균 참석율은 100%입니다.

2017년 1월에 소집된 2017년도 1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의 건 및 고유재산 투자한도 설정의 건이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2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도 고유재산 투자의 건이 승인·가결 되었습니다.

(아래 회차별 활동내역 세부사항 참조)

###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7년도 제 1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7년 01월 23일 (오후 2시)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김종욱	이현	안미현	채 준	
1. 위원 성명	김종욱	이현	안미현	채 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요약 보고의 건	-	-	-	-	이견 없음
4. 의결안건					
1. 고유재산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고유재산 투자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고유재산 펀드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17년도 제 2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7년 02월 09일 (오전 10시 30분)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김종욱	이 현	안미현	채 준	
1. 위원 성명	김종욱	이 현	안미현	채 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고유재산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17년도 제 3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7년 03월 23일 (오전 11시 25분)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채 준	이 현	안미현		
1. 위원 성명	채 준	이 현	안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17년도 제 4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7년 7월 20일 (오전 10시 00분)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채 준	이 현	안미현		
1. 위원 성명	채 준	이 현	안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위험관리실무위원회 요약 보고의 건	-	-	-		이건 없음

마) 제2017년도 제 5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7년 12월 27일 (오전 11시 00분)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채 준	이 현	안미현		
1. 위원 성명	채 준	이 현	안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1.고유재산 투자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1. 보수위원회

#### 가. 총괄

- 당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의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15년부터 감사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의 주요 보상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은 2015년 10월 1일자로 개정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나. 구성(보수위원회위원)

##### 1) 총괄

- 당사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의 역할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구성원 -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동일

(2017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문동성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2016.3.17	2018.3.17
채준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7.3.23	2018.3.23
정충용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7.3.23	2019.3.23

#### 다. 권한과 책임

##### 1) 총괄

- 당사 보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

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당사 감사위원회는 보수위원회는 2016년 10월 27일 개최된 제7회 감사위원회에서 '보수체계기준(안)'설계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 향후 '보수체계기준'에 따라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보수지급에 관한 2017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2018년 3월 개최예정인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당사 감사위원회는 2016년 10월 27일 개최된 제7회 감사위원회에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보수체계기준(안)'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모범규준에 따라 당사 보상정책 및 운영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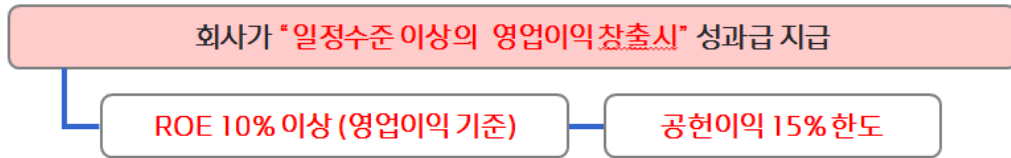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보수위원회의 역할을 겸임하여 회의일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합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기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 당사는 2016년 1월 26일 제1회 감사위원회에서 성과급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당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 규모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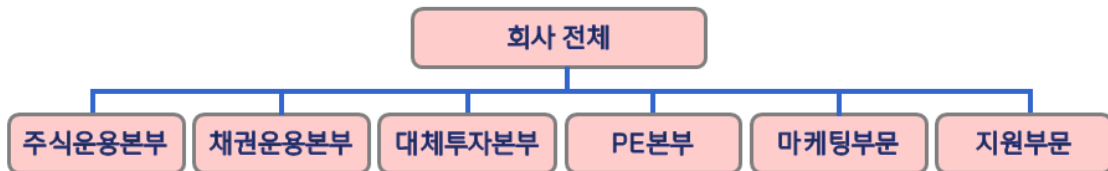
■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 일정수준 이상의 영업이익달성시(ROE 10% 이상) 적정한 규모(공헌이익의 15%) 이내 성과급 지급



■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 '증권, 대안, 마케팅, 지원부문'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산정
- 운용부문별 공헌이익의 일정수준 보상



구분	적용 본부	산정방법
증권부문	① 주식,채권운용본부	증권부문 공헌이익의 10% 산정
대안부문	② 대체투자부문	대체부문 공헌이익의 10% 산정
	③ PE본부	PE부문 공헌이익의 10% 산정
마케팅부문	④ 마케팅본부	증권부문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원부문	⑤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략본부	(증권+대안+마케팅) 평균지급율의 80% 적용하여 산정
성과보수	증권부문, 대안부문, 마케팅부문	성과보수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 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 당사는 2016년 1월 26일 제1회 감사위원회에서 성과급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당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 및 운영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국내 회사내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 변동보상 대상자는 전 임직원이며, 변동보상에 대한 이연지급자는 '보수체계기준'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이연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26일



제1회 감사위원회에서 이연지급대상자 및 이연지급기간(율)을 결정하였습니다.

##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1) 의사결정 절차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보수위원회의 역할을 겸임하여 회의일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합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 2) 활동내역 개요

- 2017년에 보수위원회 활동관련 감사위원회는 총 1회가 소집되었고,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100%입니다.

###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7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2017.02.09.(목) 오전10시  
(안건 통지일: 2017.02.0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문동성	안미현	김종욱	
1. 위원 성명	문동성	안미현	김종욱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FY2016 내부통제 업무실적 및 FY2017업무 계획보고	-	-	-	이견없음
4. 의결안건				
1.FY2016 재무제표등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FY2017 회사고유 재산 외부감사인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FY2017 외부감사인 세무조정업무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FY201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이사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FY2016 감사실시결과 보고 및 이사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FY2017 감사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FY2016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및 이사회 상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8.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 보수체계

### 가. 주요사항

####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 회사 목표달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부별, 팀별 KPI를 설정  
[각 부문별 주요 목표]
- 운용부문 : 운용성과 및 수탁고 증대 등
- 마케팅부문 : 수탁고 증대 및 신상품 출시 등
- 지원부문 : 임직원 업무지원도 평가

#####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 본부 및 팀 KPI 달성에 부합하도록 개인별 주요업무목표 2~3개 설정
- 평가대상자별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팀원	본부/팀목표와 부합하도록 <b>개인별 주요업무목표 2개~3개 설정</b>
팀장	팀/본부 KPI 목표 + 정성평가
본부장	

- 등급(A,B,C,F) 및 점수평가

	A	B	C	F
점수	100점 ~ 90점 이상	9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 60점 미만
평가 등급 배분 기준	상위 25%	상위 26% ~ 상위 75%	하위 25%	부적격

#####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 금융회사 전체의 성과와 리스크를 감안한 개인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시 성과보수액을 결정함으로써 본부별, 팀별, 개인별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개인의 성과보수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5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펀드가입하여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 ■ 성과보상 대상자 및 이연지급기간(율) 결정

대 상 자		당해년도 지급비율	이연 비율	이연지급율		
				1년차	2년차	3년차
이연지급 대상자	최고경영자(CEO)	40%	60%	30%	30%	40%
	CEO外 전임직원 0.5억원 이상	50%	50%			

- 당해년도 지급형태: 현금보상
- 이연지급분 지급형태: '펀드(당사 운용 집합투자기구)' 가입

###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 변동보상(이연변동보상 포함)은 지급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라도 이연분에 대한 해당 업무의 리스크가 해소된 경우 등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자의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이연성과보상 지급대상 임직원이 중도퇴사하거나, 재직 중에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그 임직원에게 대한 이연성과보상은 해당 사유 발생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다.
-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이사 결정으로 이연성과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 지급을 위한 펀드가입금액이 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펀드평가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 전체 보수액 중 기본연봉은 고정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변동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펀드)

-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당해연도분은 현금보상으로, 이연지급분은 당사 운용 집합투자 기구인 펀드 가입으로 구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성과보수액에 따라 최고경영자는 60%를, 0.5억원 이상 임직원은 50%를 펀드 가입으로 이연지급하고, 당해연도분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 '보상체계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최종 결정하며, 현재 최고경영자는 60%를, 0.5억원 이상 임직원은 50%를 3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 2015년 성과주의문화 정착을 위하여 일반직원에게 대한 보상체계 및 지급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정한 성과보상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 익년초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개인별 연봉 조정을 통하여 임금 지불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당사 성과급제도에 의해 부문별 손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 당사는 임직원들이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 성과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이 없었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2016년)	130.54	187.97	69.4%	171	0.76
당해년도 (2017년)	128.21	151.84	84.4%	172	0.75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예시 : 당해연도가 2017년인 경우 2016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등기 이사	전무. 상무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기타
전년도 (2016년)	보수총액	4.0	18.3	4.2	27.8	17.6	22.1	18.3	3.6	4.6	0.3
	성과보수액	0.4	3.4	0.8	4.0	2.3	2.4	2.4	0.5	0.6	-
당해년도 (2017년)	보수총액	6.3	14.9	10.7	22.0	18.4	22.1	13.2	5.0	5.3	0.2
	성과보수액	0.8	4.6	2.9	6.7	5.1	3.9	2.6	0.9	0.4	-

\* 성과보수액은 해당연도 대상분 성과급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sup>주1)</sup>	기본급 <sup>주2)</sup>	성과보수액 <sup>주2)</sup>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6년)	임원	18	26.45	4.60	0.90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00	75.93	10.38	-
당해년도 (2017년)	임원	21	31.19	8.23	2.51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98	67.99	16.32	2.29

주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sup>주1)</sup>	주식연계 상품 <sup>주2)</sup>	기타 <sup>주3)</sup>	
전년도 (2016년)	임원	4.60	3.70	-	-	0.90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0.38	10.38	-	-	-
당해년도 (2017년)	임원	8.23	5.72	-	-	2.51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6.32	14.03	-	-	2.29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 펀드 가입(당사 운용 집합투자기구)

###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6년)	임원	2.17	0.38	1.79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0.82	0.24	0.58
당해년도 (2017년)	임원	4.68	1.03	3.65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3.11	0.49	2.62

주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주3) 0000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익년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0000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15년)	임원	2.17	-	-	-	2.17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0.82	-	-	-	0.82
당해년도 (2016년)	임원	4.32	-	-	-	4.32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3.47	-	-	-	3.47

\* 펀드 가입(당사 운용 집합투자기구)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5년)	임원	2.17	0.90	1.27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0.82	-	0.82	-	-	-
당해년도 (2016년)	임원	4.32	2.15	0.90	1.27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3.47	2.65	-	0.82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7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7년(t기) 발생분, 2016년(t-1기) 발생분, 2015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sup>주4)</sup>
		축소액 <sup>주1)</sup>	직접적 조정 <sup>주2)</sup>	간접적 조정 <sup>주3)</sup>	
전년도 (2015년)	임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당해년도 (2016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5년)	임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당해년도 (2016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첨부1)

## 정 관

주 관 팀	경영전략팀
제정일자	1996.07.01
개정일자	2017.12.28

제 정 : 1988.03.26 럭키투자자문 창립총회  
개정(1) : 1989.10.20 임시주총  
개정(2) : 1990.05.26 제2기 정기주총  
개정(3) : 1995.02.18 임시주총  
개정(4) : 1995.05.29 제7기 정기주총  
개정(5) : 1996.03.30 임시주총  
개정(6) : 1996.06.14 임시주총  
개정(7) : 1997.05.23 제9기 정기주총  
개정(8) : 1998.06.25 제10기 정기주총  
개정(9) : 1999.01.08 임시주총  
개정(10) : 2000.06.27 제12기 정기주총  
개정(11) : 2001.05.31 제13기 정기주총  
개정(12) : 2002.01.08 임시주총  
개정(13) : 2004.06.11 제16기 정기주총  
개정(14) : 2005.05.11 제17기 정기주총  
개정(15) : 2006.05.30 제18기 정기주총  
개정(16) : 2009.05.13. 임시주총  
개정(17) : 2009.05.27. 제21기 정기주총  
개정(18) : 2009.05.27. 제22기 정기주총  
개정(19) : 2009.05.27. 제23기 정기주총  
개정(20) : 2012.05.31. 제24기 정기주총  
개정(21) : 2013.08.30. 임시주총  
개정(22) : 2014.05.02. 임시주총  
개정(23) : 2014.12.01. 임시주총  
개정(24) : 2015.03.19. 제27기 정기주총  
개정(25) : 2017.03.23. 2017년 정기주총  
개정(26) : 2017.12.28. 임시주총

##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키움투자자산운용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KIWOOM ASSET MANAGEMENT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① 이 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
2. 투자매매업
3. 투자중개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업무 및 부수업무
7.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업무
8. 선물투자기금 업무
9. 콜거래 업무
10. 어음매입 업무
11. 국내외 경제, 경영, 자본시장 및 기업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12. 금융투자상품 및 양도성예금증서 매매업무
13.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도서자료의 출판 업무
14. 부동산 임대
15.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된 업무
16. 상기 각호와 관련되는 기타 부수적인 업무

② 이 회사는 정관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관 개정을 통하여 제1항 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3조(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woomam.com>)에 공고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하며, 위 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 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사백만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십만 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203,408주권의 9종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 또는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전략적 제휴 및 선진 금융기법 전수,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5.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 제542조의 3 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 3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1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1(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신주가액)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시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2조(명의개서 등) 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절차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3조(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가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때에는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그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를 수리하고 절차를 완료한 때에 이 회사는 그 사실을 기재한 통지서를 주주에게 발행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한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제2항의 통지서를 첨부하여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공증에 의한

대리인을 정하여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정대리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총회일 2주간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회사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를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 제3장 주 주 총 회

제16조(주주총회의 소집)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소집한다.

제17조(주주총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취소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대표이사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주주의 의결권) 주주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1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해당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② 아래 사항들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감소
3. 재무제표의 승인
4. 배당 또는 분배금의 지급
5. 회사의 해산
6. 상법 등 관련법령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타법인과의 합병,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를 포함,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양수도
8. 회사의 이사들에 대한 연간 보수 총한도액의 결정
9. 정관 제2조에서 정한 회사의 사업목적의 변경 또는 그 사업목적 이외의 사업활동의 영위
10. 상호의 변경
11. 이사의 해임
12. 기타 상법 기타 관련 법령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

③ 아래 제24조에 따라 서면에 의해 행사된 의결권의 수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제2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의 1일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4장 이사·이사회

제 26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27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사외이사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28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단, 이 경우에도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29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법정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제28조에 따른다.

제30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의 보직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새로 선출하거나, 이사회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보고의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1(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매3개월마다 적어도 한 번 개최되어야 한다.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거나 또는 모든 이사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회사의 본점에서 개최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이사는 소집목적 기재한 서면으로 대표이사에게 이사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서면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청한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일을 정하여 회일 1주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 및 관련자료를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제33조의 1(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제34조(이사회회의 정족수 및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과 상법 제 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 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5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보수위원회 겸임)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사회가 정한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6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와 상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8조(자문위원 등)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문위원 등을 약간명 둘 수 있다.

## 제5장 감사위원회

제3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상 정해진 요건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위원장)를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법상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보수위원회의 업무도 수행하며 이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별도로설치하지 아니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1조(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위원회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6장 계 산

제42조(사업 년도) 이 회사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3조(재무제표의 작성 및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될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서류

4.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분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

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며,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이익금의 처분)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주식에 의한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고 주식의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배당한다.

③ 배당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정기주주총회의 배당 결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④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며 이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⑤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각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24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단,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③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장 보 칙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제49조(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소와 그가 설립시에 인수한 주식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제50조(창업비) ① 회사설립에 관한 비용은 5,000만원 한도내에서 창업비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창업비는 설립에 따른 제세금, 공과금, 광고인쇄비등 회사설립전까지 필요한 지출에 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199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 상호는 재경원장관의 상호변경 인가를 득한 때부터 시행한다.

③ 제9조 제3항의 규정은 1996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 이전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0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는 2005년 5월 11일 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합병의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사의 이름)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와 크레디트 스위스 자산운용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Co.,Ltd./우리카레디트 스위스자산운용주식회사라는 회사의 이름은 자동적으로 Woori Asset Management Co.,Ltd./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로 개정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27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는 2013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사의 제26기 영업년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2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19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3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8일부터시행한다.



(첨부2)

## 이사회 규정

주 관 팀	경영전략팀
제정일자	1998. 06. 10.
개정일자	2016. 10. 27.

제 정 : 1998.06.10 이사회  
개 정(1) : 2000.06.27 이사회  
개 정(2) : 2005.08.23 이사회  
개 정(3) : 2009.05.27 이사회  
개 정(4) : 2011.11.02 이사회  
개 정(5) : 2011.12.09 이사회  
개 정(6) : 2012.08.30 이사회  
개 정(7) : 2013.06.27 이사회  
개 정(8) : 2014.05.02 이사회  
개 정(9) : 2014.06.12 이사회  
개정(10) : 2014.12.01 이사회  
개정(11) : 2015.01.15 이사회  
개정(12) : 2016.10.27 이사회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키움투자자산운용주식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 라고만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본 규정 제13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사장에게 위임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5조(의장)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매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금융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6조(감사위원회의 보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장 회 의

제8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하며, 사정에 따라 그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소집권자)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회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이사회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미리 지명한 이사가 없을 경우 선임사외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의사의 진행)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로서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경우 본 규정 제10조 소집절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과 상법 제397조의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부의사항) ① 이사회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단,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 관련 사항

가. 주주총회 소집

나. 주주총회 부의안건

다. 정관의 변경(안)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경영목표 및 평가

나. 사업계획

다. 예산 및 결산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34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제1항 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마.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산 재평가

나. 중간배당

다. 자기자본 20% 이상의 계약 및 자산의 취득 처분

4. 자본금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가.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
- 나. 준비금의 자본 전입
- 다. 사채 발행 및 상환

5.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나. 이사회내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 다.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라. 이사회규정 개정 및 폐지
- 마.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바.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관련 승인

6.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 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나.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7. 기 타

- 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 나.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정 및 변경
- 다. 중요한 소송의 결정
- 라.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마.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 2.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 3.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결의 및 심의한 사항
- 4. 분기별 회사 재무실적
- 5.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 6.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임) 이사회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사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국)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장 위 원 회

제17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보수위원회 기능 포함)
3. 위험관리위원회
4. 기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설치를 결정한 위원회

② 위원회는 각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결과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각 이사 및 위원회에 참석한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각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기타 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권한)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② 기타 각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위원 결원시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위원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위원회의 소집은 각 위원이 소집하며, 소집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이 회일을 정하고 각 위원에 대하여 회일 개최 1주일 전에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통지 등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결의방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특별히 해관계인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출석위원수에서도 제외한다.
  4.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연기 및 속행절차는 본 규정 제11조의 조항을 준용한다.
- ② 기타 각 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27일부터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7일부터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9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3)

## 지배구조 내부규범

주 관 팀	경영전략팀
제정일자	2016.10. 27.
개정일자	2017.12. 28.

제 정 : 2016.10.27. 이사회

개 정(1) : 2017.12.28. 이사회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범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원”이란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공시)** ① 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회 의결로 제정·변경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나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어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장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1 절 이사회 구성 현황

제5조 (이사회 구성기준)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6조 (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매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제 2 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 (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지배구조법 또는 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에 정하는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와 여신거래 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 특정 거래기업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서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써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9조 (이사회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것과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주주총회 관련 사항,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자본금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 등이 정하는 사항을 결의한다.

③ 이사회는 종합적인 경영분석,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의 결과,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받는다.

**제10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3.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및 위원회 등 회의의 참석
2.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검토 및 문제의 제기
3.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
4. 필요한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입수하여 조사, 연구 및 활용
5. 여러 사안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른 우선 순위별로 합리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사 업무에 대한 사항의 질문, 정보의 제공요구 및 의견의 제시

2. 각종 회의록, 장부, 기타 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내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 요청
-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요한 기밀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 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⑤ 사외이사는 제4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 등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 ⑥ 사외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 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 (사외이사의 대한 정보제공)**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재무, 그 밖의 업무 집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
  2.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하여 회사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할 것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제공할 것. 다만,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4 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단, 이 경우에도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6조 (이사의 퇴임)**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3. 상법 및 관련법령 또는 정관 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4.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의 현저한 부적정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특별 결의된 경우

## 제 5 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17조 (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정기이사회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하며, 사정에 따라 그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 의 정족수 및 의결방법)** ① 이사회 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과 상법 제 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 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 제 6 절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역할 및 책임, 주주 및 고객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사회 정책 반영 및 운영계획 수립 시 활용 한다.

### 제 3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보수위원회 기능 포함)
  3. 위험관리위원회
  4. 기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써 그 설치를 결정한 위원회
- ② 위원회는 각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결과를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회(이하 본장에서 “위원회”라 함을 각 조 제목의 위원회를 말한다)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정) 후보를 물색, 심사,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④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앞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해당 후보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본인이 후보로 추천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감사위원회)** ① 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학위, 실무경험 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위원회의 사후추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감사부서의 부서장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 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감사부서의 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⑤ 위원회는 회사의 보수체계를 건전하게 수립,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보수위원회의 역할을 겸임한다.

1.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람(이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⑥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⑦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과 안건을 회의개최 1 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본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23조 (위험관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 2. 부담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고유재산 위험관리기준, 집합투자재산 위험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25조 (임원의 범위)** 이 규범에서 “임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이사(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지배구조법에 따른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
- 3. 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 4.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라 한다)
- 5. 지배구조법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

**제26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1.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2. 임원으로서 이해상충이 발생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3.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 제7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27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1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28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한다.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2. 재무예산 및 결산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③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⑥ 임원은 업무수행상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회사의 내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제3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사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업무집행책임자는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기간은 별도의 정함에 의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31조 (임원의 퇴임)** ① 이사의 퇴임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적용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제16조 제1호에서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회의 해임 결의로 퇴임한다.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6조 제1호에서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회의 해임 결의로 퇴임한다.

④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가 해임한다.

**제32조 (임원에 대한 교육)** ① 임원은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정한 내부 및 외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임원 중 선발된 자에 한하여 외부 위탁 파견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매년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내 대하여 사내 또는 사외 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33조 (임원의 성과평가)** ①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은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재무, 프로세스 및 혁신, 성장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정한다.

② 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연임 시 활용한다.

**제34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연봉과 성과급 등으로 구분한다.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단, 보수위원회를 겸직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35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②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회사의 장기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안정적 경영승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①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 제5조에 명시된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비전과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윤리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리더십과 경영혁신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제37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임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추천 받을 수 있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각종 평가와 검증 작업을 실시한다.  
③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에 대해 임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경영승계 절차 개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시점에 맞추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시 될 수 있다.

1. 중도사임
  2. 금융감독기구로부터 제재나 기타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4.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명예실추를 초래한 경우
  7. 기타 회사가 속한 시장 상황, 경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임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 받아, 제34조(최고경영자 자격요건)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 (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 시일 내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한다.  
③ 최고경영자 승계관련 담당 업무는 인사담당팀에서 지원하며 운영상황은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매년 1회 보고하도록 한다.

**제40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1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선임 및 퇴임 관련 사항은 제14조(이사 선임) 및 제16조(이사의 퇴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최고경영자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의 임면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 사유 등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 자격요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일 이후 신규 선임(연임 포함)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첨부4)

## 윤리강령

제정일자: 2014. 12. 15.

우리는 열정, 혁신, 도전의 정신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한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적 가치와 관습에 대해 회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자본시장의 공정성·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투자자보호와 고객만족의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공정·투명하고 건전한 투자회사상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창달한다.

### 제1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 제1조 (공정한 대우)

- ① 회사는 모든 주주와 투자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며, 그 권리의 보호와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한다.
- ③ 회사는 수익중심의 경영활동을 통해 지속적 성장과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제2조 (투명한 정보)

- ①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주주 및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지원한다.

### 제2장 고객에 대한 자세

#### 제3조 (고객 존중)

- ① 회사는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혁신과 열정의 정신으로 고객을 존중하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

#### 제4조 (고객 보호)

- ①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개인 정보 및 권익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제3장 경쟁사/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 제5조 (공정 경쟁)

- ①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존중하며 진정한 실력으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② 회사는 경쟁관계를 상호 발전의 계기로 삼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여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한다.

#### 제6조 (신뢰 구축)

①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②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자세

#### 제7조 (공정한 대우)

①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성, 사생활 및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상한다.

#### 제8조 (쾌적한 근무환경)

①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제5장 회사에 대한 자세

#### 제9조 (건전한 기업문화)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④ 임직원은 도전과 열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한다.

#### 제10조 (윤리경영 실천)

①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부당한 행위로 인지될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유형재산, 지적재산, 영업비밀,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⑤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조직 내에서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이나 사조직을 형성하지 않는다.

- ⑥ 관계법령이 금지한 증권 및 선물의 매매거래 또는 위수탁을 하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공정성 또는 투명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 ⑦ 직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비위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는 이로 인해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⑧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음에 서약한다.

##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제11조 (국내외 법규의 준수)

- ①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② 해외진출기업은 현지국의 선량한 기업시민으로서 현지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한다.
-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제반 국내외 법규와 사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그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여 회사의 이익을 최적화하고 투자자 및 고객의 이익을 보호한다.

### 제12조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①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②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자본시장의 유통성과 투자자보호의 역할을 다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고객의 편의성 제고,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실천 지침)

회사는 다우 전략경영실의 승인을 득하여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

본 윤리강령은 회사 내의 타 규정에 우선한다.

## [윤리 헌장]

우리는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다우의 정도를 향한다.

우리는 핵심가치인 열정, 혁신, 도전의 정신을 일상화하여

사회적 책임 수행과 공정 거래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1 우리는 주주와 투자자를 존중한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되도록 경영한다.

**2 우리는 고객의 가치 향상을 추구한다.**

고객을 위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과 열정의 정신으로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창조한다.

**3 우리는 협력회사와 공존공영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형성하여 공존공영하는데 기여한다.

**4 우리는 임직원의 행복을 위한 기업문화를 조성한다.**

다우인의 핵심가치를 근간으로 자아실현과 행복에 대한  
임직원의 욕구가 충족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